

서울특별시

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156-8 / 전송 731-6562

문서번호 법부 11010-1566

시행일자 1993. 9. 13

(정유) 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취급		시	장
보존	준영구		
기획관리실장	전결		
법부 담당관			
법제세장			
기안	이무영 등		
			협조

제목 혼령발령

1. 서울특별시구의공공시설물관할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첨부 혼령안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공보1담당관

제목 시보게재

1. 서울특별시구의공공시설물관할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랍.

첨부 서울특별시 혼령 제 호 2부. 끝.

서울특별시

(기획관리실장 전결)

(제 3 안)

수신

제목 혼령발령 통보

1. 행정 13101-1295(93.9.2)호와 관련임.

2. 서울특별시구의공공시설물관할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람.

가. 발령예정일 : 1993. 9.

첨부 서울특별시혼령 제 호(광략) 끝.

서울특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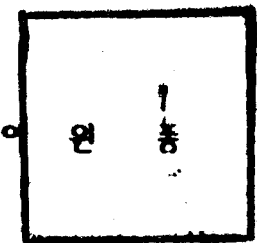
(기획관리실장 전결)

서울특별시 구역공공시설물관할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3년 9월 일

서울특별시장



서울특별시구의공공시설물관할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

서울특별시구의공공시설물관할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관할청지정) 공공시설의 관할청은 별표와 같다.

다만, 가로수와 녹지대는 차도의 관할청이 관리하고 한강상 교량·인터체인지의 관할경계는 별도로 정한다.

<별표>중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복개소하천

순위	명칭	위치	해당청	관리청	한계
1	청계천	광고(조흥은행 본점앞) ~ 동대문시장 (종로5가동 경계)	종로구 중구	종로구	청계천의 복개구조물과 하상관리 (차집관거는 행정구역관할구에서관리)
2	"	동대문시장 ~ 난계로 교차점 (삼일APT 24동)	종로구 중구	중구	"
3	"	난계로 교차점 ~ 성북천 합류점	동대문구 성동구	동대문구	"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<별표>중 9.복개소하천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